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규정 시행 관련 협조 요청

1. 보건의료정책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3. 9. 25. 시행 예정인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관련, 기존 요청드린 바와 같이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소속 회원기관들에게 안내하여 시행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정책과-4934 등 참고)
3. 또한 새로 시행되는 규정에 대하여 의료기관 현장의 질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귀 단체에서는 회원기관의 질의 등을 접수하는 창구를 마련하여, 공통된 질의나 추가 안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부로 전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참고)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비용 지원은 '23년도 한시 사업임
4. 아울러,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에 이어, 주요 질의응답을 마련하여 함께 첨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운영 Q&A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대한의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주무관 **심민정** 서기관 **이유리** 보건의료정책과 **차전경** 보건의료정책 전결 2023.9.21.
장 **이형훈**

협조자 의료기관정책 **박미라**
과장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969 (2023. 9. 21.)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4층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409 팩스번호 044-202-3924 / alswjd8995@korea.kr / 대국민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